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9839 |
|----------|-------|

발의연월일 : 2019. 4. 16.

발의자 : 박찬대 · 이학영 · 장정숙  
윤관석 · 민홍철 · 천정배  
전혜숙 · 맹성규 · 박정  
이훈 · 김한정 · 어기구  
강훈식 · 윤일규 · 이개호  
김병기 · 신창현 · 정재호  
서영교 · 김철민 · 유동수  
김병욱 · 윤준호 · 서삼석  
의원(2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

권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호의2 신설).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4조(학교급식 대상) -----   |
| 1. · 2. (생 략)<br><u>&lt;신 설&gt;</u>  | 1. · 2. (현행과 같음)<br><u>2의2. 「초·중등교육법」 제60 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u>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